

본점의 위치 변경 보고

※ 법 제418조제11호에 따른 본점의 위치 변경시 작성한다.

1. 본점의 위치 변경 보고내용

구 분	현 재	이전 후
위 치	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4, 로템타워 403호(별내동)	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0길 26, 3-4층 (삼성동)
이전일자 및 그 사유	• 이전일 : 2026년 1월 14일 • 이전사유 : 업무효율성을 위해 본점 위치 변경	

2. 금융거래자에 대한 조치
- 홈페이지 공시 및 관련자 공문 발송

■ 첨부서류

- 1. 임대차계약서 1부
- 2. 등기부등본 1부